

제주국제자유도시 국제중재센터 설립방안 Establishment Plan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김상찬* · 강나루**
Kim, Sang-Chan · Kang, Na-Ru

목 차

- I. 머리말
- II. 국내외 국제중재기관의 현황
- III. 제주국제중재센터 설립의 필요성
- IV. 제주국제중재센터의 설립에 대한 SWOT분석
- V. 제주국제중재센터 설립모형
- VI.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국제중재센터(이하 '제주국제중재센터'라고 약칭 함, Jeju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JIAC)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설립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내외 국제중재센터의 현황을 살펴본 후 제주국제중재센터가 설립되는 경우의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s) 등 네 가지 요소를 분석하여 그 설립가능성을 진단하고 있다.

논문접수일 : 2012.06.22

심사완료일 : 2012.07.25

제재확정일 : 2012.08.02

* 법학박사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학전문석사과정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주는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고,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통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세계평화의 섬' 사업추진과 아울러, 생물권보정지역 지정, 세계자연유산 등재,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 UNESCO 자연과학분야의 3관왕 달성,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등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2012년 9월에는 세계자연보전총회가 개최되는 등 세계의 문화·관광산업의 중심지로서 부각되고 있다. 제주의 지정학적 입지조건과 깨끗한 숙박시설, 영어친화적 환경특성, 무비자로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한 환경 등은 국제중재센터의 설립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국제중재센터의 설립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투자유치 환경의 인프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향후 설립되는 제주국제중재센터는, 첫째, 특정분야의 중재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국제중재센터를 지향해야 하며, 둘째, 로스쿨제도와 연계하여 국제중재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고, 셋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적 재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넷째, 설립모형은 사단법인 제주국제중재센터의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논문은 주로 제주국제중재센터의 설립 필요성과 그 가능성을 진단하고 있으며, 센터설립과정이나 설립 후의 세부적인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는 향후의 과제로 남기고 있다.

주제어 : 제주국제자유도시, 국제중재센터, 투자유치, 중재, 중재전문가, 로스쿨

I. 머리말

2006년 2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라 함)이 공포되었다. 국제자유도시란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도시를 말한다. 이러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하여 각종 지원 및 세제혜택 등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예컨대 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투자규모의 인하 및 투자의 지정범위를 14개 업종에서

24개 업종으로 확대하였고 외국인 투자가들의 장기체류를 허용하였으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또한 제주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관광, 문화, 노인복지 등 24개 업종에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록세 등을 감면 및 면제시켜주는 등 특례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한국, 중국, 일본의 중심에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의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다. 인구 백만 명 이상의 60개 도시가 2시간 이내 비행거리에 있으며, 4개국 14개 노선의 국제선 항공이 운용되고 있고 3개의 항구가 있다. 또한 2002년의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07년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의 세계지질공원 인증으로 세계 유일의 UNESCO 자연과학분야 3관왕을 달성한데 이어, 2011년 11월에는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됨으로써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이미지와 국제적 인지도는 급상승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지역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추진과 관련하여 해외투자 유치에도 청신호가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국제분쟁해결센터로 대한상사중재원이 유일하게 설립되어 있다. 하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은 주로 국내 중재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국제적인 분쟁사건을 유치·해결하는 부분은 많지 않고 심지어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기업간의 분쟁의 상당수가 외국의 국제중재기구에서 해결되고 있는 실정이다.¹⁾

이 논문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국제중재센터(이하 '제주국제중재센터'라고 약칭함, Jeju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JIAC)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설립모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내외 국제중재센터의 현황을 살펴본 후 제주국제중재센터가 설립되는 경우의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s) 등 네 가지 요소를 분석하여 그 설립가능성을 진단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논문은 설립의 필요성, 가능성, 설립모형 등 비교적 일반적인 부분만을 다루며, 구체적인 설립방안이나 설립 후의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제외하기로 한다.

1) 김상호, "인천경제자유구역 국제중재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중재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8. 3, 124면.

II. 국내외 국제중재기관의 현황

중재 등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인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통하여 국제상사분쟁을 해결하는 국제분쟁해결기관은 국제기구산하 또는 각국 가별로 설치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국제분쟁해결센터로, 워싱턴에 소재하고 있는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제네바에 소재하고 있는 세계지적재산기구 내의 중재조정센터(WIPO), 파리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상업 회의소(ICC) 부설 국제중재법원, 뉴욕에 소재하고 있는 미국중재협회(AAA), 런던에 소재하고 있는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등을 들 수 있다. 아시아 지역의 주요 중재기관으로는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 홍콩에 소재하고 있는 홍콩 국제중재센터(HKIAC), 아시아 비즈니스의 중심지인 싱가포르에 소재하는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북경에 소재하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상사중재원(KCAB)이 유일한 국제상사분쟁 해결센터라고 할 수 있다.²⁾

여기에서는 국제상공회의소 부설 국제중재법원, 중국의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홍콩국제중재센터,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심으로 그 현황을 개관하고자 한다.

1. 국제상공회의소(ICC) 부설 국제중재법원

(1) 설립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은 중재를 통한 국제 상사분쟁해결을 위하여 1923년 프랑스 파리에서 ICC 산하의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ICC는 국제 무역정보의 제공을 비롯하여 주요국제경제문제에 대한 의견제시, 신용장통일

2) 각국의 국제중재기관에 대하여는, 함영주, 「분쟁해결방법론」, 진원사, 2010, 309-315면; 김상찬 「ADR」, 도서출판 온누리, 2012, 206-212면 참조.

규칙과 같은 표준규칙 및 관례의 제정과 실시권장, 국제회의개최를 통한 기업 인간의 교류 촉진뿐만 아니라 국제중재법원을 통한 업계의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ICC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사안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관계당사자들로 하여금 중재인, 중재지, 적용법규, 공식 언어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³⁾

(2) 운영 및 활동

국제중재법원의 절차는 중재신청 및 답변, 중재절차준비, 참고사항의 작성, 중재판정문 초안 작성, 판정문 초안 검토 및 최종판정문 통지 등 5단계로 이루어진다.⁴⁾

중재신청 및 답변단계는 중재신청인이 ICC 본부의 국제중재법원사무국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하면 사무국은 이를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사무국은 접수된 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전달해야하며 피신청인은 신청서수령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중재신청에는 사전관리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중재절차준비단계에서의 중재법원은 중재합의의 존재 내지 유효성을 결정한다. 또한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고 중재지를 확인 또는 선택하여 중재비용 예납금을 결정한다. 예납금 수령 후 사무국은 서류를 중재판정부에 전달한다. 참고사항의 작성 단계에서의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제시한 서류 및 자료를 근거로 참고사항을 작성하고 그것을 2월내에 중재법원에 전달하여야 한다. 참고사항에는 당사자들과 중재인들의 이름, 중재지, 당사자들이 요구한 적용규칙, 판정에 적용되는 법률조항, 판정해야 할 주요사항 등이 포함된다. 이 단계에서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일정을 정하며 최종적으로 작성된 참고사항에는 관계당사자 및 중재판정부의 서명이 요구된다. ICC중재의 경우 3인의 중재인을 선임하는데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⁵⁾

3) 최장호 “ICC 국제중재법원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체제와 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무역학회지」 제25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00, 4면.

4) 최장호, 상계서, 9면.

중재판정 준비단계에서는 중재판정부는 분쟁관련사실을 확인하고 중재절차를 종결하며 중재판정문의 초안을 작성한다. 중재판정문 검토 및 최종 중재판정단계에서는 중재법원은 중재판정문 초안을 정밀 검토하여 판정문의 형식을 수정할 수 있으며 중재판정부의 결정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쟁점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중재법원에 의한 승인이 있게 되면 중재판정문은 중재인들에 의하여 서명된 후 사무국에 의하여 당사자들에게 통지된다.

중재재판관들이 내린 판결을 사무국에서 최종 검토해서 진행 과정에 흠이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 당사자들에게 전달하는 절차는 전 세계에의 모든 중재 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ICC 국제중재법원에서만 행해지는 절차이다.⁶⁾ 이러한 사실 때문에 ICC 국제중재법원을 통한 중재재판의 절차적 적법성이 높게 평가받고 있으며, AAA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2.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1) 설립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국제상사중재기관으로서 1956년 4월에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부설기관으로 ‘대외무역중재위원회’로 설립되고 1980년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로 개칭되었다가 1988년 현재의 이름으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상해(上海), 심천(深圳), 천진(天津), 중경(重慶)에 분회를 두고 있다. CIETAC은 2000년 ‘중국국제상업회의소’의 비준을 거쳐 ‘중국국제상업회의소중재원’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⁷⁾ CIETAC은 중국해사중재위원회(CMAC)를 제외하면 중국 유일의 국제중재기관이다.

(2) 운영 및 활동

5) 윤병철, “국제중재의 현황과 실무”, 「중재」 제328호, 대한상사중재원, 2009.8, 20면.

6) 함영주, 전계서, 310면.

7) <http://www.CIETAC.org>

국제상사중재사건에 한하여 관할하던 CIETAC은 2000년 9월 중국국제경제무역위원회중재규칙을 개정하여 국내사건까지 관할범위를 확대하고 2009년에 약 1,500여건에 달하는 국내외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양적인 측면에서는 국제적인 중재기관으로 성장하고 있다.⁸⁾ 특히 559건의 국제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세계적인 중재기관인 ICC중재법원의 동년도 중재사건 접수건수 817건⁹⁾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게 되었다. CIETAC의 성장배경에는 일찍부터 중국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 등 다양한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중재인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입장을 견지하였고,¹⁰⁾ 이러한 지원 하에 중국기업들은 중재인들의 능력과 자질에 높은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중재사건의 양적 성장에도 일조하고 있다.¹¹⁾

1955년부터 2006년까지 CIETAC에서 판정된 사건을 선별하여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수록된 총 122건의 사건 중 110건의 사건에서 총 22개국이 섭외당사자로 참여하고 있으며,¹²⁾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CIETAC의 외국인중재인명부 상 등록된 외국인 중재인의수도 275명에 달한다.¹³⁾

8) 국내중재와 섭외중재(국제중재)는 중재절차와 중재규칙에서는 별 차이가 없고 중재위원 명단 및 중재판정의 집행 등에서만 차이가 있다고 한다(강평, "중국의 중재제도", 「중재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3.8, 14면).

9) <http://www.iccwbo.org>.

10) 중국은 현실적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법조인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중재에 대한 수요는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중재인의 자격요건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중국중재법 제13조에 의하면, "중재위원회는 공정하고 풍행이 방정한 사람을 중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중재인은 다음의 조건중 하나에 부합되어야 한다. ①중재업무에 만 8년 종사한 자, ②변호사로 만 8년 종사한 자, ③판사임명이 만 8년된 자, ④법률연구직이고 법학교수이거나 고위직종사자."

11) 중국내에서의 판정 또는 판결은 자국민보호의 색채가 강하여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대외적인 비난은 물론, 지방정부의 자기지역 감싸기 정책 때문에 타지방에서의 소송이나 중재를 거부하는 등 내부적인 반발도 끊임없이 문제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CIETAC은 공정한 중재인의 선정이나 적법한 법적용의 독려 등의 자정노력을 기울인 결과 일정수준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양적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오원석·송수련, "CIETAC의 중재사건 및 CISG 적용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6권 제3호, 2011.6, 205면)

12) 국가별로 보면 홍콩 19건, 미국 18건, 아시아 12건, 유럽 13건, 일본 5건, 한국 5건 순으로 많은 사건에서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다(상계논문 207-208면).

13) <http://cn.cietac.org>. 이 중 한국국적의 중재인은 7명, 일본국적의 중재인은 5명이다

3.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1) 설립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는 1991년 7월에 급변하는 아시아 경제시장 내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기관 설립에 대한 국제적 수요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기관이다. 국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지만,¹⁴⁾ 싱가포르를 국제중재 허브로 발전시키려는 싱가포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단기적으로는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선호되는 중재기관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세계적인 중재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¹⁵⁾

(2) 운영 및 활동

중재재판관은 1명을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선임된 중재재판관도 이 중재센터의 원장이 승인해야 한다. 중재재판정의 장소는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싱가포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제 재판은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중재재판의 언어는 중재재판단에서 결정한다. 다만 싱가포르에서 중재재판을 진행할 때에는 싱가포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중재재판결과가 무효가 될 수 있다.¹⁶⁾

14)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는 싱가포르법률아카데미 소속하에 있으며, 이 아카데미는 대법원수석판사가 이사장을 맡고 대법원판사가 주된 멤버인 이사회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관계적 기관이다(김상찬, “ADR제도의 비교법적 연구-아시아의 주요국가를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19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9.12, 74면).

15) 싱가포르 정부는 국가예산으로 약 400억원을 투자하여 최고의 설비를 경비한 ADR콤플렉스 빌딩인 Maxwell Chambers를 건립하고, 여기에 싱가포르중재센터의 사무국과 국제중재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또한 중재업무 관련 수익에 대한 세금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중재전문가들이 싱가포르에서 자유로이 중재를 진행함은 물론 싱가포르를 중재지로 선호하게 되는 현실적, 실질적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국제중재사업을 장려하고 있다(윤지영, “국제중재 허브로의 KCAB를 꿈꾸며(싱가포르 해외연수기)”, 「중재」 제355호, 대한상사중재원, 2011.3, 52면).

16) 함영주, 전개서, 313면.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는 중립적인 이미지 형성을 위하여 원장은 호주사람으로 임명하고 이사진 및 사무국 역시 다국적 변호사로 구성하였다.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는 국제중재시장에서 소비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중립적인 싱가포르 국가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중립적 중재기관으로서의 이미지마케팅을 하고 있다.

2010년에 과거의 센터이용자들과 국제중재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반영, 중재규칙을 새로이 개정하였다. 새로이 개정된 중재규칙은 전통적인 중재의 장점으로 알려진 신속, 저렴, 효율에 대하여 일부 중재실무자들 사이에서 증대하고 있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변화는 새로이 신설된 신속절차 규정과 임시적 긴급처분규정 내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이전에 임시적 긴급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긴급 중재인 선정과 관련된 규정이다.¹⁷⁾

4. 홍콩 국제중재센터(HKIAC ;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1) 설립

홍콩 국제중재센터는 1985년 홍콩의 국내중재 및 국제중재를 위해 경제단체와 홍콩정부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기구이다. 국제중재사건을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해 2009년 9월 1일자로 중재규칙을 개정하고 UNCITRAL 중재규칙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여 제3국 기업들의 거부감을 감소시켰다.¹⁸⁾ 또한 홍콩국제중재센터는 중화권 국가들이 중심이 된 대중화권중재포럼(Greater China Arbitration Forum)

17)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는 2010년 7월 1일 이후 접수된 모든 중재사건에 2010년 개정 중재규칙을 적용하여 총접수건수 198건 중 88건의 중재사건을 개정 중재규칙에 의하여 진행하였으며, 20건의 신속절차요청을 받았으며, 2건의 긴급중재인선정신청을 받았다(SIAC CEO's Annual Report, 윤지영, 전개논문, 51면).

18) 홍콩국제중재센터는 2008년 9월 1일자로 단독중재인 및 의장중재인의 국적 제한에 관한 조항, 중재판정부 및 중재당사자, 홍콩중재센터 사무국의 비밀준수의무 등에 관한 중재규칙을 개정하였다.

도 창설하였다.

(2) 운영 및 활동

홍콩정부는 국제중재를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으로 인식하고 법제도와 재정적인 부문에서 홍콩국제중재센터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예컨대 홍콩정부는 홍콩에서 가장 비싼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홍콩국제중재센터에 1년에 1달러(홍콩달러)의 임대료만을 받고 있는 것만 보아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또한 홍콩정부는 홍콩중재법을 개정하여 중재센터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동시에 홍콩중재법은 자체의 중재재판규정에 따라 중재재판절차를 진행해 줄 뿐 아니라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다른 중재절차규정에 따라 중재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도와주며 홍콩에서 진행되는 중재에서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수를 결정하지 못하거나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홍콩중재센터가 대신 결정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⁹⁾

홍콩국제중재센터는 중재사건기준으로 매년 10%이상의 고속성장을 이루어내어 2008년에는 602건의 중재 사건을 접수하였고 특히 도메인네임 분쟁사건을 매년 100여건 이상 접수, 처리함으로써 아시아 도메인네임중재의 허브로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홍콩에서는 많은 중재인들이 참가하는 국제중재세미나도 매년 수차례 개최되고 있다. 홍콩국제중재센터는 매년 ADR in Asia Conference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 회의가 아시아 지역의 국제중재 관련 주요 국제회의로 자리매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²⁰⁾ 또한 홍콩중재센터는 대학과 ADR교육을 위한 국제중재인력의 양성에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 내 로펌, 상공회의소 등을 방문하여 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5. 대한상사중재원(KACB)

19) 함영주, 전계서, 314면.

20) 오현석, “아시아 국제중재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홍콩의 전략”, 「중재」 제329호, 대한상사중재원, 2009.9, 77면.

(1) 설립

1966년 중재법 및 상사중재규칙이 제정되면서 중재제도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초기의 중재법은 독일 민사소송법을 특별한 검토 없이 수용하여 입법하였는데,²¹⁾ 중재의 국제화에 따른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국제중재에 있어서의 많은 문제가 지적되면서 UNCITRAL의 모델 법을 적극 수용하기로 하고 1999년 12월에 새로운 중재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²²⁾

대한상사중재원(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은 1966년 중재법 제정 공포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 부설 국제상사중재위원회로 발족이 되었다가 1970년에는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협회로 그 기관이 독립을 하였으며 1980년에 이르러서는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그리고 이후에는 상사중재규칙의 제정 및 한차례의 개정과 중재법과 중재규칙을 한 차례씩 개정하였다. 2007년에 국제중재규칙을 제정하여 국제중재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최근 이 국제중재규칙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2011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²³⁾

(2) 운영 및 활동

지식경제부, 한국무역협회, 대한상사중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2006년 무역클레임의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무역액의 2.9%에서 클레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6년 무역액 6,340 억불에 대해 184억불의 클레임이 발생한 것으로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²⁴⁾ 이러한 수치에 비추어 대한상사중재원 이용현황은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007년

21) 양병희, “국제중재제도 활성화의 필요성”, 「중재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3.2, 6면.

22) 이에 대하여 자세히는, 장문철 외, 「UNCITRAL모델중재법의 수용론」, 세창출판사, 1999, 495면 참조.

23) 개정 국제중재규칙에 대하여 자세히는, 김민규,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의 개정을 맞이하여”, 「중재」 336호, 대한상사중재원, 2011.9, 13-19면 참조.

24) 안재철, “지역중재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중재센터의 운영”, 「중재」 제326호, 대한상사중재원, 2008.9, 102면.

국제중재사건 유치를 위한 국제중재규칙의 제정, 국내 중재제도의 개선을 위해 분쟁종합지원센터, 광주 및 전라지역중재센터와 대전 및 충청지역중재센터를 설치하였으나 기업체의 인식부족 등으로 그 이용이 활발하지 못하다.²⁵⁾

대한상사중재원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다는 설립상의 한계로 인하여 물적·인적 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에 소요되는 재원은 수수료, 설립기금, 국고 등에서 충당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나 조정위원회에 비하여 홍보의 측면이나 서비스 면에서도 뒤떨어지고 있으며 홍보의 부족은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이 가지고 있는 국내외적인 낮은 인지도를 갖게 하기에 이르렀다.²⁶⁾

거래당사자들은 판결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자국의 중재재판소를 이용하기를 원한다. 우리나라와 경제적 접촉이 많은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를 중재재판소로 지정하기를 바란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거래에 있어 아주 우월한 위치에 있지 않은 이상 객관성 부족의 문제로 결국 국제중재사건의 재판부지정에 대하여 국제상업회의소(ICC)나 싱가포르중재재판소(SIAC)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²⁷⁾

국제중재규칙이 2007년에 제정되었지만 전체적인 중재사건 수의 증가와 국제중재사건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제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실적은 외국의 주요 국제중재기구에 비하여 매우 저조한 현실이다(〈표 1〉 참조).²⁸⁾ 2011년 대한상사중재원은 국제중재규칙을 개정하여 국제중재규칙의 전면 적용·시행, 국제중재 신속절차 신설, 소액사건 중재비용 인하, 보다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중재판정부 구성 등 높은 수준의 중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활발한 대외홍보와 더불어 중재인선정과 절차진행에서의 엄정한 중립성과 기밀의 유지, 다양한 상황에서의 효율적인 대응, 중재인이나 중재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하여 국제중재분야에서 아시아의

25) 김광수, “우리나라 ADR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고찰”, 「중재」 제326호, 대한상사중재원, 2008.9, 8면.

26) 김경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2.8, 191면.

27) 함영주, 전계서, 310면.

28) 김갑유, “국제중재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중재」 제328호, 대한상사중재원, 2009.8, 4면.

대표적 중재기관으로 도약하고자 준비하고 있다.²⁹⁾

〈표 1〉 주요 국제중재기관의 연도별 국제중재건수³⁰⁾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AAA(미국)	649	672	646	614	580	586	621	703	836
ICC(프랑스)	566	593	580	561	521	593	599	663	817
CIETAC(중국)	562	468	422	461	427	442	429	548	559
HKIAC(홍콩)	307	320	287	280	281	394	448	602	
SIAC(싱가포르)	64	64	64	78	74	90	86	99	160
KCAB(한국)	65	47	38	46	53	47	59	47	78

III. 제주국제중재센터 설립의 필요성

국제거래의 활성화는 국제상사분쟁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필연적으로 국제중재의 증가를 가져온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국제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최근 타결된 한미FTA, 한EU FTA를 감안한다면 향후 한국기업이 당사자가 되는 국제중재사건의 증가는 필연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국제중재 시장에서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³¹⁾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계약체결 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하려 하지 않고 싱가포르나 홍콩 등 외국에서의 중재를 선호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³²⁾ 또한 국제중재 중에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ICC중재의 경우 최근 수년간 한

29) 김민규, 전계논문, 19면.

30) 이 자료는 <http://www.siac.org>(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홈페이지), <http://www.hkiac.org>(홍콩국제중재센터 홈페이지), 윤병철, 전계논문, 7면, 김상찬 전계서, 207면 등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임.

31) 실제로 국제중재 전문잡지인 Global Arbitration Review는 분쟁금액이 2조 5천억원이었던 현대오일뱅크 사건을 2010년 최고의 중재사건으로 선정한 바 있다.

32) 김연호,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 현황과 발전방향”, 「중재」 제317호, 대한상사중재원, 2005.9, 6면.

국기업이 아시아지역의 어떤 다른 나라보다도 ICC에서 많이 당사자로 등록된 국가 중의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고 한다.³³⁾

오늘날 영미나 유럽의 주요 선진 국가는 물론 주요 국제기구에서도 국제 상 거래에서 발생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분쟁해결기구로서 중재기구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들 국제중재기구를 설립한 국가들은 국제중재사건을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홍콩과 싱가포르, 중국의 경우 국제중재를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온갖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에 있어서 국제중재가 필수적인 제도로 인식되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적 현실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거하여 2001년 11월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 인센티브제도 강화, 출자총액제한 적용배제로 대기업의 투자환경 조성 등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투자유치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자유도시 인프라 시설로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의 경우도 사업비만 수조원대에 이르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으며, 이들 프로젝트는 자유무역지구, 제2관광단지 조성 등과 함께 국제자유도시 정착을 위한 필수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다.³⁴⁾

이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제비즈니스 거점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바, 앞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조성이 정착되면 국내외의 기업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에 투자하여 영업, 마케팅, 물류, 금융 등 제반 경제활동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다양한 상사분쟁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국제자유도시 내에 무역, 투자, 금융 등 비즈니스활동에 따

33) 김갑우,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에서의 도전과제와 활성화 방안", 「중재」 제315호, 대한상사중재원, 2005.3, 32면.

34) 예컨대 핵심프로젝트의 하나인 제주영어교육도시조성사업의 경우, 사업비만 1조 7,806억원을 투입하는 대형 사업으로, 국제학교 12개교와 영어교육센터, 교육문화예술단지, 주거 및 상업시설 등이 건설될 계획이며, 2만 3,000명이 거주하는 하나의 소규모 도시급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른 다양한 상사분쟁의 해결촉진을 위하여 국제중재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국제중재센터가 설립되면 국제거래에서 발생되는 국내·외 기업 간의 각종 상거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게 되는 외국의 국제 사법기관이나 외국의 국제중재센터를 거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투자유치 활성화는 물론 제주지역, 더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국제중재센터의 설립으로 제주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투자유치환경의 인프라로 작용하여 제주지역에 외국기업의 유치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뛰어난 지리적 입지와 저렴하고 깨끗한 숙박시설,³⁵⁾ 영어친화적 환경특성³⁶⁾ 무비자로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한 환경 등이 제주국제자유도시에의 국제중재센터의 설립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요컨대 제주국제중재센터의 설립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의 성공적 추진과 운영을 뒷받침하는 한편 국제상사분쟁의 사법질서 형성과 유지에 있어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IV. 제주국제중재센터의 설립에 대한 SWOT분석

1. 강점 (Strength)

(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근거한 국제중재센터

대한상사중재원의 경우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와 더불어 홍보의 취약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³⁷⁾ 제주에 제주 국제중재센터가 설립된다면 그 설립근거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될 것

35)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에는 특급호텔 17개소를 포함하여 332개의 숙박시설이 있다.

36) JDC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추진이나 국제학교 등의 설립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장기적으로 상당한 강점이 될 수 있다.

37) 신군재, "한국에서 ADR정착화를 위한 상설ADR기관의 활성화 방안", 「중재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6. 8, 192면.

이다. 동법은 제1조에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1년 5월 23일에 개정된 동법의 제155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에서는 “국제 평화 및 협력관련 기구의 설치, 그 밖의 국제평화 및 협력을 위한 사업을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이러한 사업의 시행 및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의 성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국제중재센터의 설립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산하에 국제중재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재정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고, 이러한 점으로 기존의 대한상사중재원이 가지고 있던 재정적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산하에 두는 것보다는 독립한 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제주특별자치도나 JDC에서 일정한 예산을 지원하는 형식이 바람직할 것이며,³⁸⁾ 그렇다면 구태여 그 설립근거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둘 것이 아니라 ‘중재법’에 의하여 설립하여도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나 JDC 등의 예산지원을 위하여 특별법 또는 시행령의 관련조항을 개정하면 될 것이다.

(2) 외국인의 자유로운 왕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56조 제1항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 중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38) 한편, 경제자유구역법 제28조 제2항에서는 “경제자유구역내 상사분쟁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에 중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를 행하는 사단법인의 지부를 설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김상호, 전계논문, 125면에서는, 이 법 규정을 근거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국제중재센터는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지부를 둘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경우에도 나중에 살펴보는 바와 같이 대한상사원의 지부 형태로 두는 방안도 있고, 독립적인 사단법인 형태로 두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주자치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증의 발급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추천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도지사의 추천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자유로운 왕래를 위하여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국가를 180국가로 확대하였고, 외국전문인력의 체류기간의 상한(1-2년)도 4-5년으로 확대하고 있다.³⁹⁾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산업분야 2단계제도개선의 하나로 '항공자유화'를 추진하여 외국항공사에 대한 제5자유 운수권 확대 적용으로 인하여 제3국 항공기의 제주경로로 국제취항노선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외국인의 자유왕래를 한층 더 보장하는 길이 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의 자유왕래가 가능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특성은 제주국제중재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큰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3) 동북아의 중심지로서의 지정학적 여건과 교통의 편리성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국제중재센터 역할을 하기 좋은 지정학적 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제주는 북경과 도쿄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 미국과 일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제3국으로 좋은 위치에 놓여있다.

제주국제공항에서는 매년 4개국(중국, 일본, 베트남, 대만) 14개 국제노선이 운항되고 있으며 2011년의 경우 항공 편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17,066편이

39)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통계에 의하면, 무사증입국제도가 시행된 후 1년간(2006.7.1부터 2007.6.30까지) 무사증입국자는 22,537명으로, 전년의 4,694명에 비하여 385% 증가하였고, 외국인관광객의 수도 전년 16,778명에 비하여 34,726명으로 1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출범, 그간의 성과와 과제」, 2007.5).

아시아권에서 운항이 되고 있다(〈표 2〉 참조). 이러한 국제선 항공편의 비약적인 증가는 중국 및 일본, 동남아시아의 사람들이 제주도를 방문하기에 더욱 용이하고 시간이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표 2〉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운항통계⁴⁰⁾

(단위 : 편)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일 본	2,382	2,729	2,072	2,142	2,310	13,158
동남아	2,704	4,514	1,868	645	547	12
중 국	2,970	4,578	1,994	1,920	2,492	3,896
미 주	-	1	-	-	-	-
기 타	-	3	1	1	-	-
계	8,056	11,825	5,935	4,708	5,349	17,066

특히 우리나라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와는 달리 중국과 일본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이면서 같은 한자문화권의 아시아국가라는 점에서도 중국과 일본이 관여된 국제거래에서 분쟁해결지(중재지)로서의 제3국으로서 한국은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지리적·문화적 여건을 잘 활용하면 아시아지역에서 발생하는 국제상사분쟁을 제주국제중재센터로 유입할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2. 약점(Weakness)

(1) 제주특별자치도 내 국제거래 분쟁 부족

국제거래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의 경우 국제중재사건은 그에 비례하여 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제주에 국제중재센터가 설립되더라도 이러한 문제점은 피해야 할 수는 없다.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에는 아직 외

40) <http://www.airport.co.kr/doc/www/flight/U030507-1.jsp>

국기업뿐만 아니라 국내기업도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제중재사건을 외부에서 끌어와야 하는 입장에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제주국제중재센터의 설립에 있어서 커다란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근거법률 및 정부지원의 불투명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제주에 국제중재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나 '중재법'이 될 것이다. 만약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산하에 국제중재센터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동법을 개정하여 국제중재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와 더불어 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재법 제40조에서는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국내외 상사분쟁을 공정, 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를 하는 사단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주국제중재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바로 정부의 지정이나 지원 또는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3) 중재 전문가의 부족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 구성에 있어서 대부분이 법률전문가, 무역전문가 및 건설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민·상법상의 모든 거래를 망라한 중재인 구성이 미흡하며 외국인 중재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제주에 국제중재센터가 설립되더라도 이와 같은 인력의 부족은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더할 것이다. 현재 제주에는 제주지방변호사회에 47명의 변호사가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28명의 교수가 재직하고 있고, 기타 제주국제대학교, JDC, 행정기관 등에 10명 이내의 법학교수 또는 변호사가 있는 정도이다. 제주대학교에도 40명 정원의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되었고 2012년부터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지만, 이들 졸업생 중 몇 명이 제주지역에 남아있을지는 미지수이다.⁴¹⁾ 특히 국제중재사건을 다루려면 영어

나 해당국가의 외국어에 능통한 중재인이 필요한데, 이중 어느 정도가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아직 파악하기 어렵다.

3. 기회(Opportunity)

(1) 로스쿨제도로 인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 배출

2009년부터 로스쿨제도가 도입되었고 2012년부터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들이 배출되고 있다.⁴²⁾ 전국의 25개 로스쿨은 각각 다양한 특성화를 지향하고 있고, 다양한 전공출신 대학원생이 각 로스쿨의 특성화 프로그램에 의하여 교육받은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은 기존의 ADR제도 및 대한상사중재원에서의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지속되어 오던 전문가의 부족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들은 해당분야의 지식과 법률지식을 고루 갖춘 전문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에도 로스쿨이 설립되었고 2012년부터 매년 30내외의 변호사가 배출될 것이다. 특히 제주대학교 로스쿨은 특성화 목표로 '국제법무'로 정하고 국제투자·국제거래를 집중분야로 선택하고 있어서, 이들은 향후 제주국제중재센터의 훌륭한 잠재적 중재인 후보군이 될 것이다.

(2) 제주국제자유도시조성 완성

제주국제중재센터의 설립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다. 중재제도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감정적인 부분에서나 시간·비용의 면에서도 소송보다는 용이하기 때문에 기존의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평화의 섬'이라는 이미지의 재고에도 기여할 것이며 중재를 위하여 제주

- 41) 현재로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는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송무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으므로 바로 변호사로서 활동하지는 못하지만, 중재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수습기간 중에도 가능할 것이다.
- 42) 2012년 3월에 발표한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 1,451명이 합격하였으며, 제주대학교 로스쿨에서도 30명이 합격하였다.

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숙박, 교통, 식사에 필요한 비용들은 제주에서 모두 소비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지역경제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생각할 때 제주국제중재센터의 설립은 장기적으로 국제자유도시의 완성에 기여할 것이다.

반면, 제주국제자유도시조성의 완성 또한 제주국제중재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조성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국내외의 투자기업이 증대될 것이고 국제중재의 수요도 증대될 것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국제학교설립, 외국인학교 설립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들에게 보다 친근한 지역으로 변화될 것이며, 국제적으로 제주의 이미지가 더욱 좋아져, 기업이나 사람이 많이 왕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3) 국제중재 수요의 증대

국제중재는 투자 및 국제거래에 있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분쟁에 대한 안정적인 해결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고 국제거래 분쟁해결과 관련해서는 국제중재가 소송보다 보편적인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2000년대 들어 투자자와 국가 간 투자분쟁이 중재를 통해 해결되는 사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투자중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⁴³⁾ 그리고 최근 한미 FTA, 한EU FTA 채결 등으로 국제중재의 중요성이 커지고 국제중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의 경우에도 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내·외국 기업의 투자가 늘어날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중재의 수요가 크게 증대될 것이다.

4. 위협(Threats)

(1) 중국 국제중재기구의 도약

43) 김지호, “최근 국제중재의 동향”, 「중재」 제324호, 대한상사중재원, 2007.12, 67면.

중국은 160개 이상의 중재위원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 중국국제경제무역 중재위원회(CIETAC)의 국제경제무역중재와 중국해사중재위원회의 해사중재 만이 국제중재기구라고 할 수 있다. CIETAC은 21세기 들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사건을 다루는 중재기관으로 성장하였다. 국제적인 교역량이나 실적으로 볼 때 아시아의 중심적인 분쟁해결기관으로서 도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CIETAC의 이러한 도약은 홍콩국제중재센터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와 더불어 제주국제중재센터의 설립 및 발전에 지속적으로 위협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2) 대한상사중재원 등 국내 국제중재센터의 존재

우리나라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이 대표적인 국제중재센터로 자리하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는 국내중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국제중재규칙의 제정 및 개정 등을 통하여 국제중재 분야의 아시아의 대표적 중재기관으로 도약하고자 야심찬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조직면에 있어서도 이미 부산지부를 두고 있고 광주와 대전에 지역중재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며, 최근 인천경제 자유구역(Incheon Free Economic Zone) 내 법무인프라 형성 및 서비스 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지부 형태로 국제중재센터를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⁴⁴⁾ 인천경제청은 국제비지니스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IFEZ의 특성을 고려해 이를 송도에 유치할 계획이다. IFEZ는 경제자유구역법상 중재지부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국제공항 접근성과 외국투자기업 입주 환경 조성 등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같은 국채사정도 제주국제중재센터의 설립에 위협적 요소로 작용될 것이다.

(3) 소송에 의한 해결을 선호하는 국민성

우리나라의 경우 ADR에 의한 분쟁해결보다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44) 김상호, 전계논문, 121-145면.

하는 성향이 아직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국민들의 ADR제도에 대한 인식이나 대한상사중재원 등 기존의 ADR기구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⁴⁵⁾ 미국의 경우 미국의 연방법원과 지방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사건 중 최종적으로 판사의 판결로서 종결되는 사건의 비율은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법원에 연계된 조정, 중재, 화해 등의 ADR 등으로 해결되는 것⁴⁶⁾과 대조적인데, 이렇듯 소송에 의한 해결을 바라는 국민의 소송선호도는 적어도 당장은 제주국제중재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일정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4) 심리적 거리감

제주도는 항공편과 선박만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재를 위해서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 찾아오기에는 비용 면이나 심리적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부분 역시 객관적인 중재와 중재비용을 낮게 산정하는 방법이 가장 큰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신속하고 접근이 용이한 중재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온라인(On-line) 중재절차를 위한 관련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것도 지리적 한계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이라 할 수 있다.⁴⁷⁾ 다양한 분쟁해결기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분쟁해결기법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만큼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절차에 임할 수 있고 당사자 간의 우호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⁴⁸⁾ 독창적이고 합리적인 ADR기법을 창조해서 다른 ADR기관과의 차별화를 해야 할 것이다.

45) 신군재, 전계논문, 199면.

46) 김성수, “국제중재 낙수(落穗)”, 「중재」 제318호, 대한상사중재원, 2005.12, 44면.

47) 윤선희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언”, 「중재」 제331호, 대한상사중재원, 2010.3, 5면.

48) 김경배, 전계논문, 193면.

5. 분석

앞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제주국제중재센터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s) 등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그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SWOT분석은 특정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부역량(S,W)과 외부역량(O,T)을 조사하고 이 조사를 바탕으로 강점을 부각시키고 약점을 줄이며,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을 억제함으로서 전략적 방안을 도출해 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주국제중재센터의 설립 가능성을 살펴보는데 있어서도 이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여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강점(Strength)과 기회(Opportunity)를 최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따라 인적·물적 기반조성이 되어 있는 점은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제정, 이를 통한 외국인의 자유로운 왕래, 동북아 중심지로서의 지정학적 여건과 제주국제공항을 통한 교통의 편리성, 세계유일의 UNESCO 자연과학분야 3관왕 달성을 통한 세계적인 인지도의 상승 등은 큰 장점이다. 여기에 로스쿨제도를 통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중재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고, 제주국제자유도시조성이 완성되는 시점에서는 각종 인적·물적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며,⁴⁹⁾ 국제중재의 수요가 크게 증대될 수 있는 것은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강점과 기회를 잘 살리면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국제중재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약점(Weakness)과 위협(Threats)에 대하여는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국내, 특히 제주지역 내 국제중재 사건수가 적다는 점, 설립근

49) 예컨대 제주는 지리적 여건상 공항이 거의 유일한 교통수단이므로 제주국제공항의 역할이 매우 높으며, 최근 신공항건설 필요성이 제기되어 각종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국제공항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착 등으로 인한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과의 직항 및 위상을 강화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버금가는 중추공항으로 육성시켜야 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이성용, "제주국제자유도시 접근성 제고 및 신공항 건설 필요성", 「JDI OPINION」 제101호, 2011.4, 12면 이하; 허종, "제주신공항 건설추진여건 및 전략", 「제주발전포럼」 제30호, 제주발전연구원, 2009.8, 43면 이하).

거 법률 및 정부지원이 불투명하다는 점, 국제중재 전문가의 부족 등의 약점과 중국 국제중재기구의 도약, 대한상사중재원 등 국내 국제중재기구의 존재, 소송을 선호하는 국민성, 심리적 거리감 등의 위협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최소화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도내 또는 국내의 국제중재 사건수가 적다는 문제는 재정확보를 통한 저렴한 중재비용, 양질의 국제중재를 위한 물적 인프라 구축, 지속적인 홍보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중재인의 확보, 국제적 규범에 비추어 손색없는 중재제도의 확립, 대외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방법원,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때 이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설립근거 법률 및 정부지원이 불투명하다는 문제는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현행 '중재법'에 의하여도 국제중재기구를 설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향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개정하여 설립이나 지원 등에 대한 근거조항을 두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국제중재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약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신중하고도 점진적인 준비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중재인들을 발굴하여 위촉하는 작업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싱가포르 조정센터의 경우에는 싱가포르 법학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 싱가포르 법학원은 판사, 변호사, 기업변호사, 로스쿨 교수 등 약 8,0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⁵⁰⁾ 싱가포르 조정센터의 활성화는 싱가포르 법학원의 지원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제주국제중재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제주지방변호사회,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주지방법원의 법관뿐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 25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배출되는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들을 포함한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중재인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는 반드시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등 외국인 중재인도 다수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 국제중재기구의 도약이나 대한상사중재원 등 국내 국제중재기구의 존

50) http://www.sal.org.sg/content/abt_us.aspx

재가 위협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후발기구로서 중국이나 홍콩, 싱가포르의 국제중재기구와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위상이나 우리나라의 위상이 달라질수록 제주국제중재센터의 위상도 달라질 것이다.

V. 제주국제중재센터 설립모형

제주국제중재센터의 설립 모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기존의 국제중재센터의 지부의 형태로 설립하는 방안이며, 또 다른 하나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사단법인 제주국제중재센터의 형태로 설립하는 방안이다.

1. 기존의 국제중재센터의 지부 형태로 설립하는 방안

(1) 장점

제주국제중재센터를 기존의 국제중재센터의 지부로 설립하는 방안은 독립적인 사단법인 제주국제중재센터의 형태로 설립하는 방안에 비하여 설립추진 과정이나 인가과정 등에서 보다 쉬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그 대상이 외국의 국제중재센터가 아니라 대한상사중재원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⁵¹⁾ 대

51) 외국의 국제중재기구의 지부를 생각하는 경우, ICC중재법원을 생각할 수 있는데, ICC중재법원은 이미 North America(New York), Latin America(Panama), United Kingdom(London), Eastern Mediterranean Middle East & Africa(Tunis), 그리고 2009년 9월에는 홍콩에 아시아지역사무국(Asia office of ICC Court's Secretariat) 등 6개의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지역사무소 책임자를 Consultant, Director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국제중재사건을 접수·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홍콩의 경우 지역사무소 책임자를 Secretariat로 지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사무실과 직원 6명을 두어 국제중재사건을 접수·처리하는 등 파리 본부사무국의 역할을 분담하는 지역사무국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오현석, 전개논문, 77면).

한상사중재원은 이미 부산에 지부를 두고 있고, 인천경제자유구역에도 지부를 두려고 추진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지부를 두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다면 대한상사중재원으로서는 거절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⁵²⁾

또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지부로 설립하는 경우, 지금까지 쌓아온 대한상사중재원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공유하게 되어 국제중재센터로 정착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이 가지고 있는 국제중재경험은 물론이고, 국제중재규칙 등 제도적 인프라, 국제중재를 담당하는 중재인 등을 같이 활용할 수 있고, 설립과정에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 유일의 국제중재기구인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심으로 힘을 모은다면 홍콩, 싱가포르, 중국에 못지않은 국제중재센터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일 수 있다.

(2) 단점

제주국제중재센터의 정체성이 문제될 수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착과 연계하여 제주국제중재센터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여도 결국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지부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특히 운영 면에 있어서도 대한상사중재원의 통제와 감독을 받게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연락사무소 규모의 수준으로 전락 할 가능성도 있다. 장기적으로 국제적인 중재기구로 발돋움하는데 한계가 있게 된다.

2. 사단법인 제주국제중재센터의 형태로 설립하는 방안

(1) 장점

52) 대한상사중재원의 지부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나 정부(JDC) 등에서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의 경우 사건수수료만으로 자체운영을 할 수 없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상당액의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

사단법인 제주국제중재센터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독립적인 국제중재기구로 출발할 수 있으므로 정체성이 명확해 진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정착되는 단계에는 국내외 투자기업이 증가할 것이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가 국제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이에 걸맞게 제주국제중재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제주특별자치도, JDC, 제주지방법원,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협력하고, 제주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인프라와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널리 홍보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제주국제중재센터는 독자적인 기구로서 설립해도 승산이 있을 것이다.

(2) 단점

설립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하여 지방정부나 지역주민들에게 설득하여 합의를 도출해야 하므로 설립과정이 길어질 수 있고, 설립과정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된다. 설립을 위한 초기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중재에 있어서 대한상사중재원과 경쟁관계가 될 것이다.

VI. 맺음말

앞에서 제주국제중재센터가 생길 경우에의 장단점 및 위협이나 기회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아직까지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국제중재센터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문이나 공식적 견해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제주의 지정학적 위치나 제주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들이 국제중재센터를 설립하기에는 아직 불충분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오늘날 국제상거래와 국제분쟁이 증가하고 국제중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당장은 우리나라에 하나뿐인 대한상사중재원 조차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국제중재센터를 새로이 설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주는 일찍부터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세계평화의 섬'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제주평화연구원'과 '제주국제평화센터'의 설립,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등으로 인하여 평화를 브랜드로 하는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을 뿐 아니라, 2002년 생물권 보호지역 지정,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까지 세계 유일의 UNESCO 자연과학분야 3관왕을 달성하였고, 말은 많지만 2011년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는 등 세계적으로 어느 지역보다도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고, 2012년 9월에는 세계자연보전총회가 개최되는 등 세계의 문화·관광산업의 중심지로서 부각되고 있다. 더욱이 제주대학교에 로스쿨이 설립되고 국제법무 내지는 국제투자 및 국제거래 전공의 법률전문가가 매년 30명 내외 배출된다는 것은 이러한 단점이나 위협적 요소를 잠재울만한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제주에 국제중재센터를 설립하고 국제중재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특정분야의 중재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국제중재센터를 지향해야 한다. 홍콩국제중재센터가 도메인네임중재의 허브로 자리매김하여서 국제적으로 두각을 보이는 것에서 많은 시사를 받을 수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생각한다면 국제투자와 관련한 분야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로스쿨제도와 연계하는 방법이다. 로스쿨제도의 도입으로 법률지식 뿐만 아니라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양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하게 되면 국제중재 전문가의 양성은 물론, ADR에 대한 인식을 제고로 국민들의 ADR제도에 대한 선호도의 증대가 기대되며, 로스쿨의 커리큘럼에 ADR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단기과정의 국제중재 전문가양성과정, 중재인의 정기적 재교육과정 등 다양한 연계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인 지원이다.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는 국제중재를 하나의 산업으로 판단하고 이를 제도적·재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제주국제중재센터가 설립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의 완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정부도 JDC를 통하여 센터의 기반시설을 하는데 전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하고 운영에 있어서도 당분간은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아울러 '중재법'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하지만,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제주국제중재센터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항을 신설하여 그 설립과 운영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제주국제중재센터의 설립모형은 사단법인 제주국제중재센터, 또는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제주지부의 형태가 될 것이다. 어떤 형태가 될 것인지, 어떤 형태가 좋을 것인지는 향후 더 상세한 논의과정을 거쳐 결정할 문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제주국제중재센터의 설립 필요성과 그에 따른 장단점,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그 성격이나 분량상의 제한으로 아직은 센터의 설립 필요성을 주장하고 그 설립 가능성을 진단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고, 센터설립과정이나 설립 후의 세부적인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는 향후의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 김상찬, 「ADR」, 도서출판 온누리, 2012.
- 장문철 외, 「UNCITRAL모델중재법의 수용론」, 세창출판사, 1999.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출범, 그간의 성과와 과제」, 2007.5.
- 함영주, 「분쟁해결방법론」, 진원사, 2010.
- 강 평, "중국의 중재제도", 「중재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3.8.
- 김갑유, "국제중재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중재」 제328호, 대한상사중재원, 2009.8.
- _____,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에서의 도전과제와 활성화방안", 「중재」 제315호, 대한상사중재원, 2005.3.
- 김경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2.8.

- 김광수, “우리나라 ADR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고찰”, 「중재」 제326호, 대한상사중재원, 2008.9.
- 김민규,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의 개정을 맞이하여”, 「중재」 336호, 대한상사중재원, 2011.9.
- 김상찬, “ADR제도의 비교법적 연구-아시아의 주요국가를 중심으로-”, 「중재 연구」 제19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9.12.
- 김상호, “인천경제자유구역 국제중재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중재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8.
- 김성수, “국제중재 낙수(落穗)”, 「중재」 제318호, 대한상사중재원, 2005.12.
- 김연호,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 현황과 발전방향”, 「중재」 제317호, 대한상사중재원, 2005.9.
- 김지호, “최근 국제중재의 동향”, 「중재」 제324호, 대한상사중재원, 2007.12.
- 신군재, “한국에서 ADR정착화를 위한 상설ADR기관의 활성화 방안”, 「중재 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6.8.
- 안재철, “지역중재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중재센터의 운영”, 「중재」 제326호, 대한상사중재원, 2008.12.
- 양병희, “국제중재제도 활성화의 필요성”, 「중재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3.2.
- 오원석 · 송수련, “CIETAC의 중재사건 및 CISG 적용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6권 제3호, 2011.6.
- 오현석, “아시아 국제중재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홍콩의 전략”, 「중재」 제329호, 대한상사중재원, 2009.9.
- 윤병철, “국제중재의 현황과 실무”, 「중재」 제328호, 대한상사중재원, 2009.8.
- 윤선희,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언”, 「중재」 제331호, 대한상사중재원, 2010.3.
- 윤지영, “국제중재 허브로의 KCAB를 꿈꾸며(싱가포르 해외연수기)”, 「중재」 제355호, 대한상사중재원, 2011.3.
- 이성용, “제주국제자유도시 접근성 제고 및 신공항 건설 필요성”, 「JDI OPINION」 제101호, 2011.4.

최장호, “ICC 국제중재법원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체제와 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무역학회지」 제25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00.

허 종, “제주신공항 건설추진여건 및 전략”, 「제주발전포럼」 제30호, 제주발전연구원, 2009.8.

[Abstract]

Establishment Plan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Kim, Sang-Chan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Kang, Na-Ru

The Master's Course,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This paper aims to stress the need of establishing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hereinafter called 'Jeju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JIAC)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nd to provide its establishment model. For this, it is diagnosing the possibility of its establishment by analyzing four factors including 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and threats in the case of establishing Jeju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after examining the present situation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s home and abroad, first of all.

Jeju is located in the geopolitically key point of Northeast Asia, and domestic and foreign organizations are constantly investing in it through building Free International City. And recently, it won a triple crown in the UNESCO natural science area including being designated as a UNESCO

World Natural Heritage Site, Biosphere Reserve, and accreditation of Global Geopark along with the project of 'Island of World Peace', and it was designated as 'the 7 top natural wonders of the world' etc., which has increasingly made it very famous globally. And in addition, it has been emphasized as a hub of the global cultural and tourist industry including holding World Conservation Congress in September, 2012 etc.

Jeju's geopolitical conditions, clean accommodations, English-friendly environment characteristics, environment to allow free arrival and departure with no-visa entry and so forth will serve as positive factors to build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in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can be work as an infrastructure of environment to attract investment in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This paper is arguing the following arguments in relation to Jeju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which will be constructed in the future: First, an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should be pursued, which is equipped with expertise and professionalism in relation to specific areas. Second, international arbitration specialists should be cultivated in connection with the law school system. Third, the government and local autonomous entities should provide active support institutionally and financially. Fourth, for the establishment model, a form of corporation Jeju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is desirable. This article is mainly diagnosing the need and possibility of establishing Jeju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and the future studies are to be made further in relation to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center and detailed operation methods after its establishment etc.

Key words :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Jeju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to attract investment, arbitration, arbitration specialists, law school

